

- 4)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.
 - 식재료비 : 일 3,600원 - 간식비 : 일 2,000원
- 5)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5등급 수가 산정 기준에 따른 급여비용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6)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.
- 7) 이용료는 매월 10일 전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.
- 8)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, 이용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.
- 9) 이용료의 납부는 계좌 입금으로 한다.

7. 이용대상자

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이용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
- 1)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1 ~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.
- 2) 등급 외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저소득자,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.

8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- 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 - ①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 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 - ③ 표준요양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2) 수급자의 의무
 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-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 -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 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 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 -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